

한국★★위원회 상임감사

주의 · 권고 · 행정상 개선 요구

제 목	임·직원 국외여행(출장) 관리 미흡 및 등급 적용 기준 보완 등
소 관 부 서	▲▲▲부, □□□□부
조 치 부 서	▲▲▲부, □□□□부
내 용	

1. 업무 개요

한국★★위원회(이하 **위원회)의 임·직원 국외여행(출장)과 관련하여 ▲▲▲부의 경우 「직무관련 국외여행 심의 및 관리」, 「항공운임 집행지침」 등에 의거 국외 여행을 관리하고 있으며, □□□□부의 경우에는 「여비규정」, 「항공운임 집행지침」, 「예산회계규정」 등을 준수하여 예산의 지출통제를 이행하고 있다.

2. 관계 규정 등(판단기준)

「직무관련 국외여행 심의 및 관리」 제7조(계획서, 보고서 제출 및 등록)에 의거 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자는 30일 이내에 위원장이 정하는 별도 서식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. 「항공운임 집행지침」 제5조제3항에 의거 출장복명(결과 보고서) 시 항공마일리지를 기록하고, 내부 @##시스템에도 등록하도록 되어있다.

항공마일리지는 공무여행으로 인해 발생한 공적 관리대상임으로 「항공운임 집행지침」 제5조제11항, 제12항에 의거 관리되어야 한다.

그런데 일부 국외여행(출장) 직원들이 출장복명서(결과보고서) 및 [표 4]과 같이 내부 @#@시스템에 마일리지를 누락(미등록)하였다.

또한 회00부서(□□□□부 지출담당)는 「항공운임 집행지침」 제4조제5항에 의거 국외항공운임의 경우 항공운임 영수증, 항공권 사본(e-티켓) 등으로 지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도 필히 확인해야 하며, 「예산회계규정」 제32조, 제35조 제2호에 의거 자금의 지출시 증빙서 등을 확인 한 후 결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3. 감사 결과 확인된 문제

국외여행(출장)을 관리하는 ▲▲▲부에 제출된 자료를 기준으로 국외여행 결과 보고서 등을 검토한 결과, 2018년도 15건, 2019년도 1건이 제출 기한을 [표 3]의 내용과 같이 짧게는 3일, 길게는 251일까지 지연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였다.

이는 담당부서의 관리가 순조롭게 이행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한 결과이고, 이와 관련 국외여행(출장)으로 발생한 마일리지를 [표 4]과 같이 내부 @#@시스템에 누락한 내용으로 2018년 19건, 2019년(7월말 기준) 5건으로 확인되었다.

이와 더불어 출장여비 산출 시 적용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명령서와 복명서(결과 보고서), 지출결의서의 환율적용 금액이 일치 될 수 있도록 규정상 좀 더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하여 예산액과 지출금액이 비교 되도록 내용 보완

[표 3] 국외출장 보고서 제출 지연 내역

구분	2018년도 출장 내역	출장자	출장지	기간	제출일	경과일
1	홍콩YSS국 초청 기관교류 방문	AAA, BBB CCC, DDD	홍콩	'18.03.24. ~ 03.28.	'18.05.10.	13
2	2018 문화&&회관 종사자 해외연수 참가	&&&	영국 에든버러	'18.08.08. ~ 08.14.	'18.10.26.	43
3	@@@@날레 건축전 기자단 해외%& 동행	\$\$\$	이탈리아 @@@	'18.05.23. ~ 05.27.	'18.07.06.	10
4	aa%%극장 개관 40주년 기념 연간 프로그램 조사	EEE, FFF, GGG	프랑스 아비뇽, 파리	'18.07.19. ~ 07.26.	'18.11.14.	81
5	[교육]단기해외연수프로젝트(독일, 이탈리아)	HHH, III JJJ	독일 프랑크푸르트, 이탈리아 @@@	'18.08.23. ~ 08.31.	'18.12.17.	78
6	[교육]단기해외연수프로젝트(영국)	KKK, LLL MMM, NNN	영국 런던, 에든버러	'18.08.08. ~ 08.15.	'18.10.26.	42
7	주워싱턴 ★★★★★원 ★★★★★ 체험관 미디어 콜렉션 작품 스크리닝 추진 설치 협력	^^^	미국 워싱턴DC	'18.09.01. ~ 09.07.	'18.11.14.	38
8	aammm 개관 40주년 기념 신규 교육프로그램 연구조사	OOO, PPP	싱가포르	'18.09.05. ~ 09.10.	'18.10.23.	13
9	한국&*지원협의회 해외연수	QQQ, RRR	미국 LA, 샌프란시스코	'18.09.08. ~ 09.16.	'18.11.01.	16
10	[교육]단기해외연수프로젝트(영국, 벨기에)	SSS, TTT	영국런던, 벨기에, 브뤼헤 등	'18.09.09. ~ 09.17.	'18.12.06.	50
11	AA@##지원대상사업 해외 모니터링	UUU, VVV, WWW	스위스루체른, 취리히, 스톡홀름	'18.09.01. ~ 09.08.	'18.10.24.	16
12	한영 문화%\$\$ 공동기금 진행결과 Aaa-ACE 심포지엄 참석	CCC, XXX YYY	영국 런던, 독일 베를린 등	'18.09.29. ~ 10.06.	'18.11.05.	3
13	2018 잘츠부르크 글로벌 세미나 (Young Cultural Innovator)참가	ZZZ, ABC	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	'18.10.14. ~ 10.22.	'18.12.15.	24
14	[교육](지정형)단기프로젝트해외연수	DEF	프랑스 파리	'18.12.15. ~ 12.23.	'19.03.15.	52
15	[교육](지정형)단기프로젝트해외연수	GHI	호주 시드니	'18.12.13. ~ 12.19.	'19.09.26.	251
계		15건	-	-	-	-

구분	2019년도 출장 내역	출장자	출장지	기간	제출일	경과일
1	2019 @@@@날레 기자단 해외%& 동행	\$\$\$	이탈리아 @@@	'19.05.08. ~ 5.12.	'19.7.11.	30
계		1건	-	-	-	-

[표 4] 공무 국외여행(출장) 시 마일리지 발생 내역

구분	총출장건수	입력건수	미입력건수	비고
2018년	30건	11건	19건	
2019년	8건	3건	5건	7월까지 종료된 출장 건수 기준

또한 □□□□부(지0담당)의 경우 국외항공운임의 지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「항공운임 집행지침」 제4조제5항에 의거 증빙자료(항공운임 영수증, 항공권 사본 등)를 확인 하여야 함에도 2018년도 7건, 2019년(7월말 기준) 1건의 내용을 파악해 보니 항공권 등(e-티켓, 영수증)의 증빙 없이 인보이스만으로 처리하였고, 출장자 인원수와 동일한 증빙이 아닌 일행 중 1명의 증빙만으로도 비용 처리된 내용도 확인할 수 있었다.

[관계 부서 의견]

- ▲▲▲부에서는 출장을 이행하고 난 이후 30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종용하고 있으며, @#@시스템에 마일리지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나, 미 이행된 건수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완 하겠다는 담당자 의견 제시
- □□□□부(지출)의 경우 많은 건수를 처리해야 하는 입장에서 항공운임 지출 건에 대해서는 인보이스만으로 처리한 사례도 있다고 하였으며, 추후 규정 및 지침에 의거 적극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의견 제시

4. 조치할 사항

한국★★위원회 위원장은 국외여행(출장)과 관련하여 절차에 의한 관리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①▲▲▲부의 경우 공적 관리대상인 항공마일리지를 해당자들에게 적시에 입력하도록 의무화하고, 「항공운임 집행지침」 제5조에 의한 관리 및 「직무관련 국외여행 심의 및 관리」 제7조에 의거 직원의 의무가 이행될 수 있도록 업무관리를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를 권고 드리며, [표 3]에 의한 국외출장 보고서 제출이 최소 3일부터 최대 251일 지연된 사실과 이중 선택받아 추진된 [교육]단기프로그램 5건의 경우

모범이 되어야 할 사안임에도 「직무관련 국외여행 심의 및 관리」 제7조에 의한 관리를 소홀이 한 담당부서에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. [권고, 부서주의]

② 아울러 국외출장 검토 시 「여비규정」 제26조(임직원이 아닌 사람의 여비)해당하는 경우 국외여행 심사 시 ‘국외 여비 지급표’ 내 ‘적용 등급’ 등도 포함하여 적시하도록 하고, 출장비 산출 기준을 ‘국외출장신청 시점(국제 환율 적용)’을 적용토록 개선하여 주시고, 매년 해외여행(출장)을 이행하는 임·직원들은 ‘마일리지’를 우선 사용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[개선]

* 향후 ‘마일리지’ 관리에 대한 부분을 재검토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.

③ 더불어 □□□□부(지0담당)의 경우 국외여행(출장)에 따른 항공료 지급 시 「항공운임 집행지침」 제4조제5항에 의거 증빙자료 등을 확인 후 진행토록 행정상 개선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, 「예산회계규정」 제32조, 제35조제2호에 의거 자금의 지출시 증빙서 등을 확인 한 후 결의될 수 있도록 하며, 2018년도 ‘@@@@@날레 %&기자’와 같이 이중 지급(3,300,000원)된 사례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요하며, 담당부서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. [개선, 부서주의]